

2018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계획

목 차

- I 추진경과
- II '18년 주요 개정사항
- III '18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 IV 열린어린이집 지정·운영 세부사항
- V 행정조치사항

붙임 1.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붙임 2. 열린어린이집 현황 및 서식

I

추진 경과

1. 추진 배경

아동학대 근절대책('15.1월)의 하나로
시설개방 · 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추진('15년~)

- ① **법률 개정**('15. 9. 19. 시행) :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권(법 제25조의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대표 비율이 50%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법 제25조)
-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 :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5년),
우수 열린어린이집 선정('15~'16년, 매년 100개소)

2. '17년도 추진사항

'17년부터 열린어린이집 개념, 지정유형(지자체형, 우수형) 및 기준, 재지정 및 취소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본격 추진

사업계획

- '17년도 사업계획 통보 및 교육(5월)
-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배부(5월, 3,500부)

지정

- **지자체형 1,859개소, 우수형 100개소 지정**(장관상, 현판 수여)
* 지자체형 중에서 매년 시도 추천 받아 우수형 지정

선정 시군구	총계	국공립	사회복 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인증/ 미인증
202	1,859 (100%)	522 (28.1%)	40 (2.2%)	41 (2.2%)	659 (35.4%)	498 (26.8%)	4 (0.2%)	95 (5.1%)	1,829/ 30

평가반영

- **지자체형 지정실적에 대해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반영(9월)**
* 어린이집 20개소 이상은 5개소 지정 시 5%, 20개소 미만은 3개소 이상 지정시 5% 부여

포상

- **지자체형 선정·운영, 교육·홍보·컨설팅(센터) 실적 반영 장관표창(10개: 지자체 7명, 센터 3명) 수여**

Ⅱ

'18년

주요 개정사항

1. 우수형 선정기준

2017년

우수형 선정 시 평가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17년 미인증 어린이집 선정현황

- 지자체형 30개소
- 우수형 1개소

(지정 시는 인증 받음)



2018년

(신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한하여 **우수형 선정**,
장관상 수여

2. 평가배점 조정

열린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육성·운영을 위해
과정·절차 배점을 줄이고(10→5점),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배점을 높임(10→15점)

2017년

- 다양성 (10점)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5점
 - 지역사회 연계활동 5점
- 우수프로그램/
지자체 자체선정
(10점)



2018년

- 다양성 (5점)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점
 - 지역사회 연계활동 2점
- 우수프로그램/
지자체 자체선정
(15점)

3. 현장부담 완화

2017년

(2-가) 신입원아부모 O.T.
(2-나) 부모 개별상담

서류 제출

(우수 프로그램)
**제출 분량 제한
및 형식 없음**



2018년

서류 간소화

신입원아부모 O.T. → 확인서류 과다
부모 개별상담 → 개인정보 문제

현장확인으로 **변경**

<어린이집 현장 부담 완화 조치>

- ① 평정항목 중 개방성(공간개방성,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 상담)은 현지 확인을 통해 실시하고 서류 및 사진자료 제출 금지
- ② 현지확인 항목 외에 지자체 별도로 정하여 현지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으로 확인 가능함
- ③ 우수형 추천시에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만 제출받고, 그 밖의 사항은 지자체의 통보를 기반으로 선정 예정

우수 프로그램

제출분량 제한

필요성 및 목적, 사례, 평가 및 적용
중심으로 기술. **15p 내로 제한**

4. 세부선정기준 개정

건물 구조적으로 보육실의 복도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가점 신설

2017년

(1-가) 공간개방성

복도 창과 보육실 문 창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7점**



2018년

급간 신설

(1-가) 공간개방성

복도 창과 보육실 문 창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7점

다만, 복도 창이 50% 이상인
경우 가점(1점) 부여 - [8점]

4. 세부선정기준 개정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3-가)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4-나) **횟수 축소**
지역사회 범주 예시 등 **구체화**

2017년

(3-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지자체형·우수형: 연 2회

(4-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 지역사회범주: 지자체, 소방서,
우체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018년

(3-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지자체형·우수형: 연 1회

(4-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지자체형 반기별 1회

우수형 분기별 1회

✓ 지역사회범주: 평가인증지표(2-4-5)
의 지역사회연계 범주와 동일하게
조정

5. 인센티브 및 운영관리 강화

자율운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2점) 부여** (신규·변경 위탁은 고시 개정 예정)

각종 실태 점검·조사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자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함

※ 전수조사, 특별한 사유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실시 가능

관리 방안

자율운영 확대와 함께 지자체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점검(6월)** 하여 시정조치 등 조치 실시
→ 운영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7월, 12월)**

6. 장관상 수여방식

2017년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장관상 수여자
→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2018년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장관상 수여자 변경
→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에
대한 공동 형태인 '어린이집'
으로 수여

Ⅲ

'18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1. 추진목표

목 표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추진 과제

과 제

1. 가이드라인
(부모, 어린이집) 마련

2.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3. 관리운영 강화

세부 과제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부모, 어린이집) 제작·배포

① **지자체형 확산(1,859→3,000개소)**
(시군구별 5개소 이상)

② **우수형 100개소 지정**

① **자율운영 및 관리 강화**

② **활성화 지원, 홍보 및 포상 강화**

2. 추진과제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마련

부모용, 어린이집용으로 구분·활용되도록 제작·배포(2월)

① **부모용** : 열린어린이집 소개, 프로그램 참여방법,
협조사항 중심

② **어린이집용** : 지정요건과 절차,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중심

2. 추진과제

②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자체형

➤ **시군구(229)별 5개소 이상**(1,150개소 이상)을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

- 신규지정 및 재지정으로 **'22년까지 5,750개소 이상 확대**
 - * '17년 1,859개소 → '18년 3,000개소 → '22년 5,750개소(전체 15% 이상)
- 지자체가 **지자체형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군구별 5개소를 초과**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도 **지자체형 인정**(어린이집 수가 20개소 이하는 3개소 이상)
 - * '공간개방성',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은 반드시 준수

우수형

- 지자체형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되는 **우수형**을 **매년 100개소 지정·포상**하여 개방성과 참여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 확산
- 지자체형 중에서 **매년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지정**

2. 추진과제

②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 열린어린이집 유형별 선정·관리기준 >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형
개념	어린이집의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지자체형 보다 강화된 어린이집 개방성과 부모의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어린이집
지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및 재지정	(신규) 지자체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지정 (재선정) 지자체장이 기존 지정된 지자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 지자체형 중에서 매년 시도 추천을 받아 우수형으로 지정·포상 전년도 선정된 우수형도 재지정 가능
지정 취소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자체의 장이 지정 취소 조치	지자체형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에는 우수형도 지정취소한 것으로 간주

2. 추진과제

②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 열린어린이집 유형별 선정·관리기준 >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형
지정 요건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라. 부모교육(연 2회)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분기별 1회)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반기별 1회) ⑤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분기별 1회)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월 1회)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2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월 1회)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월 1회)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분기별 1회) ⑤ 우수프로그램 심의. 반영

2. 추진과제

③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운영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열린어린이집 지정·운영 지원

-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 설명회(1회)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 수요조사·컨설팅·상담 지원

어린이집 부모교육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자료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2. 추진과제

③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인센티브

➤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자율운영
신설·강화**(’18년 보육사업안내 반영)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지자체형 5점, 우수형 10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2점) 부여**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포 상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추진**

- 지자체는 지자체별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지자체 자체 시행)

지자체 보육
사업 평가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실적을 **’18년 보육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 ’18년 시군구(229)별 5개소 이상 선정·운영하되, 어린이집 수가 20개소 이하의 시군구는 3개소 이상 선정(평가기준)
- 우수형 선정시 시도별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수, 지자체형 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배정·선정

2. 추진과제

③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인센티브

자율운영

부모모니터링, 지자체의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각종 실태·점검·조사에서 제외함**

-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
-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같음**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운영실태 정기점검

자율운영 확대와 함께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6월)**, 운영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7월, 12월)**

* 지자체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점검(6월)하여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추진과제

③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홍 보

➤ 열린어린이집 **선정시기**와 **병행**하여 **홍보 추진**

현장참여	기획보도	보도자료
기관장의 열린어린이집 참관 및 현장참여* 독려(연중) * 열린어린이집을 현장방문하여, 참관 및 영유아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등 홍보 실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및 국내외 선도모델을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기획보도 추진 검토 (10~12월)	열린어린이집 결과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12월)

IV

열린어린이집
지정·운영
세부사항

1. 지정 대상

대 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형과 우수형으로 참여·지정 가능

제 외

지정 제외 공통기준이며,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정제외 요건 추가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⑦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 등이 제기되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2. 지정 기준

지정요건

지자체형과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은 다음의 **선정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형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공용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창구	공간 개방성 (참관실, 창문, 투명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없음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나. 부모 개별상담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라. 부모교육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바. 부모 만족도 조사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연 1회 연 2회 분기별 1회 연 2회 분기별 1회 연 1회 연중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없음	연 1회 이상 연 2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u>분기별 1회</u> <u>월 1회</u> <u>연 2회</u> 연중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없음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연 1회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	연 1회 <u>월 1회</u> <u>월 1회</u>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반기별 1회	<u>분기별 1회</u>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
6. 우수 프로그램	-	○

2. 지정 기준

세부 선정기준

- 어린이집의 **구조·운영**(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우수 프로그램**으로 **세분화**

- 신규(재지정)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이어야 함
- 단, 영역별 최소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해당

✓ 개방성 (30점 만점) ⇒ 20점 이상

✓ 참여성 (40점 만점) ⇒ 30점 이상

✓ 지속가능성 (10점 만점) ⇒ 5점 이상

✓ 다양성 (5점 만점) ⇒ 3점 이상

☞ 총점에서 동점이 있는 경우 개방성, 참여성을 우선 선정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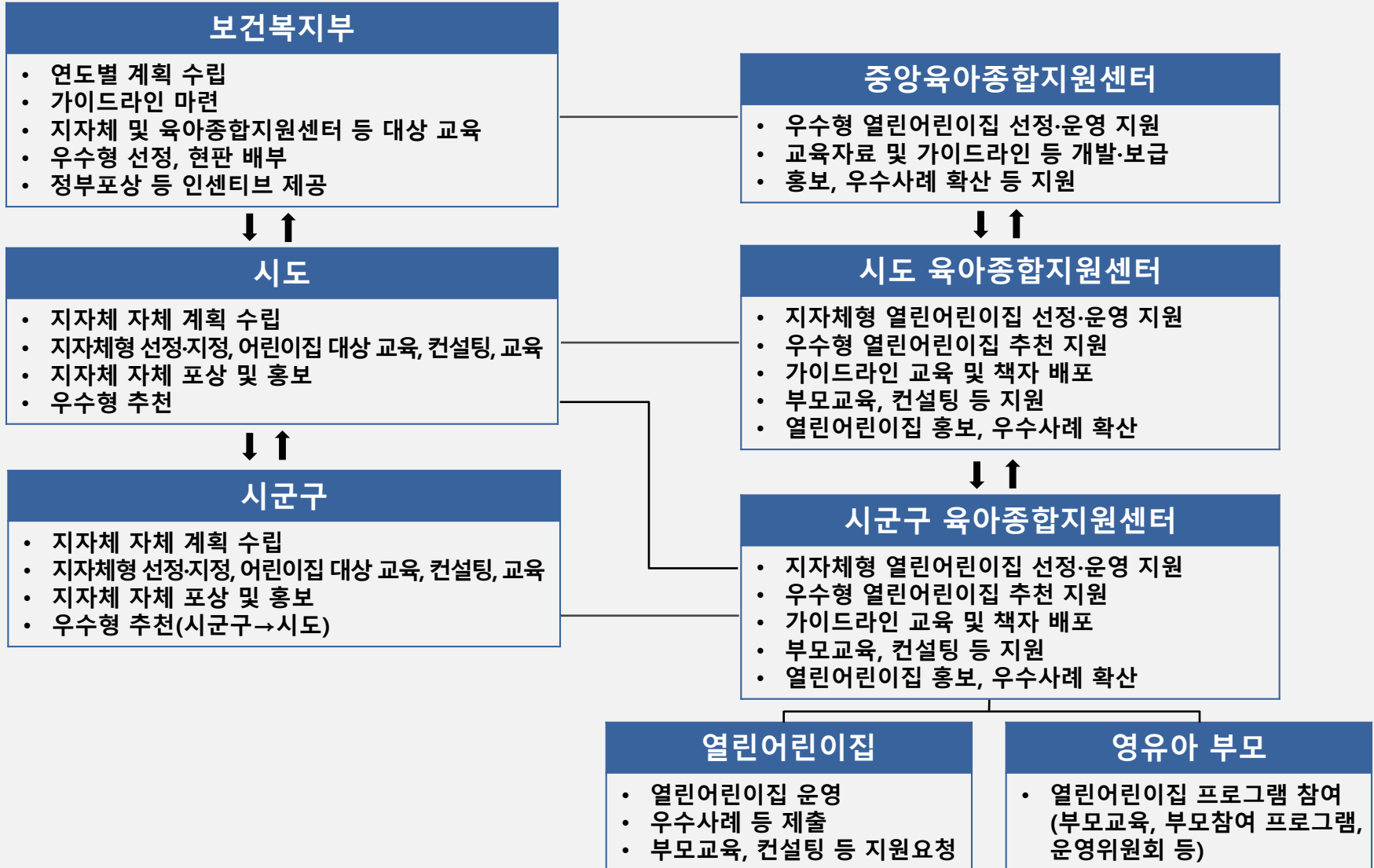
2. 지정 기준 - 세부 선정기준

선정 항목	배점
1. 개방성	30
가. 공간 개방성	15
- 참관실(관찰실) 모든 보육실 설치	15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 시 3점 가점	10 (13)
-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7
*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 시 3점 가점	(10)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7
*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 시 3점 가점	(10)
<u>*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 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u>	(8)
나.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다. 정보 공개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5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등	5
2. 참여성	40
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연 1회 이상)	4
나. 부모 개별상담 (연 2회 이상)	4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4
라. 부모교육	4
- 지자체형: 연 2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이상 - ①수요조사 및 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4 2

선정 항목	배점
마. 부모참여프로그램 ('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10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10 5
바. 부모만족도 조사	4
- 지자체형: 연 1회 - 우수형: 연 2회 - ①만족도 조사지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지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4 2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연중 운영)	10
3. 지속가능성	10
가. 부모참여 활동 수요조사 (연 1회)	4
나. 부모 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3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3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4. 다양성	5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2
- <u>지자체형: 반기별 1회</u> - <u>우수형: 분기별 1회</u>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15
6. 우수 프로그램 (우수형)	
총점	100

3. 관리체계

<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체계 >



3. 관리체계

지자체 주관,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설 명 회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 1회**
이상 개최

컨 설 팅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 실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컨설팅** 및 열린어린이집 **상담** 지원

교육·홍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자료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의 **현장 출장** 등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여비
등 지급 조치 필요

4. 지정절차

선정방법

선정공고 및 심사

선정·지정

지자체형

- 지자체장은 **시군구별 5개소 이상**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함. 다만, 어린이집 수가 20개소 이하의 시군구는 3개소 이상 선정 가능
- **어린이집 종류 및 규모별 균형 있게**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계획 반영
- 지자체가 지자체형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군구별 5개소를 초과**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도 **지자체형으로 인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우수형

- 지자체형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되는 **우수형을 매년 100개소 지정·포상**
- **지자체형 선정요건**(공간 개방성, 프로그램,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미준수 시 지자체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우수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 **우수형 선정** 시 시도별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수, 지자체형 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배정·선정**

4. 지정절차

선정방법

선정공고 및 심사

선정·지정

❖ 사업실적 평정기간: 2018. 1. ~ 2018. 9. 기준

선정공고

지자체의 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 통보

선정심사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자체 자율**(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선정위원회 구성시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전문가 등, 지자체 공무원 외에 **외부위원을 50% 이상 참여가능 하도록 하여 선정의 객관성 확보 조치**
- **불필요한 서류작성을 배제**하여 어린이집 보육업무 영향 최소화

<어린이집 현장 부담 완화 조치>

- ① 평정항목 중 **개방성**(공간개방성,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 상담)은 **현지확인**을 통해 실시하고 **서류 및 사진자료 제출 금지**
- ② 현지확인 항목 외에 **지자체 별도로 정하여 현지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으로 확인 가능함
- ③ **우수형** 추천시에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만 제출받고**, 그 밖의 사항은 지자체의 통보를 기반으로 하여 선정 예정

4. 지정절차

선정방법

선정공고 및 심사

선정·지정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주기 표준화 관리

지자체형

➤ 매년 10월에 지자체장이 선정·지정서 배부,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지자체장은 선정된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정서 반드시 배부(지정서 미배부 시 미지정으로 함)

우수형

➤ 매년 11월에 지자체형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12월 선정, 선정된 날로부터 익년도 10월 31까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하며 현판 배부

4. 지정절차

선정방법

선정공고 및 심사

선정·지정

<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 절차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복지부 → 시도, 2월)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시도 → 시군구, 2월)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설명회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통보
(복지부 → 지자체, 12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대상기관 통보
(시도 → 복지부, **11.10.까지**)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서** 통보
(지자체, **10월**)



열린어린이집 선정공고 또는 계획 통보
(지자체 → 어린이집, 2월)

5. 재지정

지자체형

- 매년 10월에 지자체장이 신규 선정시 기존 선정된 어린이집이 지자체형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신규 선정기준과 동일)
- 지정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로 함

우수형

- 매년 11월에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12월 선정
- 선정한 날로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하며 현판 배부
- 재지정된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는 금년도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추천 가능 함

6. 지정취소

취소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취소사유

공통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정취소 사유 추가 가능

-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⑦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 ⑧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 ⑨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자격취소
- ⑩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⑪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단,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함)
- ⑫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 ⑬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6. 지정취소

취소절차

- 열린어린이집 **지정권자**는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통보** 실시
 -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정취소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취소 절차 진행**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이 선정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 시·군·구청장은 지정 취소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조치**(우수형 포함)
 - 지정취소일은 지정취소가 확정된 날로 함

운영포기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신청에 **의하여 열린 어린이집 지정 포기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해당 지정권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제출하고 해당 지정권자는 지정취소 통보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V

행정 조치사항

1.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관리

- 지자체의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수립·통보**
(시도→시군구→어린이집, 2월)
-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센터 지원)으로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 개최**(2월)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 실시**(3월~), 희망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상담 지원** 등(육아종합지원센터)
- **2018 열린어린이집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제출**
(시군구→시도→복지부, 4월 10일까지)
 - * 지자체별 설명회, 컨설팅, 지자체형 선정·홍보 등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실시**(복지부→시도, 6월)
 - * 복지부에서 정기점검 개요, 방법 등 수립 통보 예정

2.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

- 지자체형 선정기준, 절차, 선정기관수를 **준수하여 '18. 10월까지 선정·지정서 반드시 배부**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미선정시, 해당 지자체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적용되지 않는 바, **반드시 선정을 추진하여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바람**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지자체형 5점, 우수형 10점), 국공립 재위탁 심사시 가점(2점), 보조교사, 포상 및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반영, 자율운영 보장을 위한 조치(부모모니터링('17.3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17.7월~),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 등을 제외 함)
- 시·도지사는 **'18. 11. 10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우수형을 추천**, 복지부장관은 우수형 지정·현판 배부(11월)

붙임1.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2018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선정 항목	배점
1. 개방성	30
가. 공간 개방성	15
- 참관실(관찰실) 모든 보육실 설치	15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10
*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 시 3점 가점	(13)
-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	7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 시 3점 가점	(10)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7
*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 시 3점 가점	(10)
<u>*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 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u>	(8)
나.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다. 정보 공개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5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등	5
2. 참여성	40
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연 1회 이상)	4
나. 부모 개별상담 (연 2회 이상)	4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4
라. 부모교육	4
- 지자체형: 연 2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이상	4
- ①수요조사 및 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충족	2
- 실시횟수만 충족 시	

선정 항목	배점
마. 부모참여프로그램 ('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10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10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	5
- 실시횟수만 충족 시	
바. 부모만족도 조사	4
- 지자체형: 연 1회 - 우수형: 연 2회	4
- ①만족도 조사지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지 모두 충족	2
- 실시횟수만 충족 시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연중 운영)	10
3. 지속가능성	10
가. 부모참여 활동 수요조사 (연 1회)	4
나. 부모 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3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3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4. 다양성	5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2
- <u>지자체형: 반기별 1회</u> - <u>우수형: 분기별 1회</u>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15
6. 우수 프로그램 (우수형)	
총점	100

1. 개방성

선정 항목	배점
1. 개방성	30
가. 공간 개방성	15
- 참관실(관찰실)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 설치	15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10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13)
- 보육실 문 투명 창 설치	7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 시 10점 배점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10)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7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10)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8
나. 부모 공용공간 (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다. 정보 공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5
라. 온라인 소통 창구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등)	5

1. 개방성

가. 공간개방성

개요	부모가 편안하고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개방성 증진이 필요하며, 보육시간 중 언제든지 보육활동을 관찰 할 수 있는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여부로 판단 함
배점	15점
평정기준	- 참관실(관찰실) 15점(모든 보육실 설치)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10점(모든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13점) -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7점(모든 보육실)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을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10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되어 전체 보육실이 개방된 경우 7점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10점) * <u>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 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8점)</u>
확인 방법	현장확인

1. 개방성 – 공간 개방성

❖ 사진제공 :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어린이집



참관실(일방경)



보육실 문 투명 창

1. 개방성 – 공간 개방성

❖ 사진제공 : 서울 구로구 현대열린어린이집



복도에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 투명 창

1.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개요	부모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자료를 나눌 수 있는 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을 비치하여 등하원 시 부모와 아이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배점	5점
----	----

평정기준	부모 공용 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1곳 이상 설치 여부 - 부모 공용공간에는 기본설비(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이 현관 등에 설치 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을 별도 공간이 아닌 교사실, 베란다 등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분 설치하고 기본설비(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

확인방법	현장확인
------	------

1. 개방성 – 부모 공용 공간

❖ 사진제공 :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어린이집
서울 구로구 현대열린어린이집



부모 상담실



부모 대기실

1. 개방성

다. 정보공개

개요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수시(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월, 수시 공시)로 확인하고 수정하여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게 함
배점	5점
평정기준	어린이집 보유·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하는지 여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공시범위 및 횟수(보육사업안내 p143 참고)에 맞게 정보공개 - <u>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u>
확인방법	공시항목에 대한 현장확인

1. 개방성 - 정보공개



투명한 보육정보를 위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통합정보공시

위반사실의 공표

평가인증

보육정보공개API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지역별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조회하세요.



빠른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Q 검색

오후6시종일반 어린이집 찾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어린이집·유치원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시개요

 공시항목

 관련법령

 보육통계

공지사항

FAQ

더보기 +

- 오후6시종일반 정보수정요청 안내 2017-02-10
- 어린이집 회계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연계... 2016-10-25
- 어린이집 회계업무지원을 위한 서비스 2016-09-30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모든 정보를
알아보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보육정보공개 API

보육정보공개 API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개방성 - 정보공개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기본현황	가. 일반 현황		
	1) 어린이집 이름, 설립일, 설립유형, 재공서비스,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등 어린이집 기본 현황	수시	수시
	2) 설치 · 운영자 이름, 원장 이름	수시	수시
	나. 시설 현황		
	1) 건축연도, 건물층수, 건물유형, 건물소유형태	수시	수시
	2) 건물 전용면적, 대지 총면적, 보육실 수 및 면적, 놀이터 면적 등, 비상재해대피시설 종류	수시	수시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 장소, 기기 종류, 카메라 성능(화소), 운영방식 등 현황	수시	수시
	가. 연령별 학급 반현황	수시	수시
	나. 보육교직원 현황		
	1) 직종별 · 자격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3.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현 기관 근무연수	연 1회	4월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통과정 주당 운영시간	수시	수시
4. 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2) 보육과정 운영 계획	연 1회	4월
	가. 보육비용		
	1)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2) 그 밖의 필요경비의 항목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나.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1) 특별활동 영역, 프로그램명 및 대상 연령	월 1회	매월
	2) 주당 운영횟수 및 1회당 운영시간	월 1회	매월
	3) 프로그램 단가 및 업체명	월 1회	매월
5. 예산 ·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	연 1회	4월
	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연 1회	10월

6. 건강 · 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관리 현황		
	1) 운영방식, 급식인원, 급식담당인력(영양사 · 회사 인력),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수시	수시
	2) 식중독 발생 및 처리 현황	수시	수시
	3) 식단표	월 1회	매월
	나. 환경 안전 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수시	수시
	2) 정기소독 관리 현황	수시	수시
	3) 음용수 종류 및 수질검사 현황	수시	수시
	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1) 소방대피 훈련여부	수시	수시
	2)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	수시	수시
	3) 가스점검, 소방안전점검, 전기설비 점검 여부	수시	수시
7.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1) 영유아의 생명 · 신체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2) 보육교직원 생명 · 신체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3) 화재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6) 통학버스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현황	수시	수시
	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나.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1) 통학버스 운영 여부, 신고 현황	수시	수시
	2) 통학버스 승차 인원	수시	수시
	3)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	수시	수시
	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실시 현황	수시	수시

1. 개방성

라. 온라인 소통창구

개요	어린이집과 부모, 부모와 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마련
배점	5점
평정기준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코너,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 다만 부모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확인방법	온라인 소통자료 현장확인

2. 참여성

선정항목	배점
2. 참여성	40
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연 1회 이상)	4
나. 부모 개별상담 (연 2회 이상)	4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4
라. 부모교육	4
- 지자체형: 연 2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 ①수요조사 및 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frac{4}{2}$
마. 부모참여프로그램 ('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10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frac{10}{5}$
바. 부모만족도 조사	4
- 지자체형: 연 1회 - 우수형: 연 2회 - ①만족도 조사지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지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frac{4}{2}$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연중 운영)	10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개요	신입 원아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철학,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지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 함
배점	4점
평정기준	연 1회 이상 - 학기초 집단 오리엔테이션 외에 중간 입소원아 부모 수시 개별진행 *당해연도 신입 영유아의 90% 이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확인방법	오리엔테이션 자료, 안내문, 신입원아 명단, 운영일지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우수형 공통) 1회 이상 실적을 현장확인

나. 부모 개별 상담

개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생활전반에 대해 부모와 담당 보육교사의 의견 교환 등 개별 상담 실시
배점	4점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영유아 90% 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 실시 여부 * 단,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확인방법	운영일지 또는 부모상담기록,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우수형 공통) 2회 이상 실적을 현장확인

2. 참여성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장, 보육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를 운영 함
배점	4점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①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회의록 ③회의결과 안내 공지 등 <u>모두 충족</u>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법적 준수사항임 (영유아보육법 제25조)
확인방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회의록,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우수형 공통) 3회 이상 실적 제출

2. 참여성

라. 부모교육

개요	영유아 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등에 대해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배점	4점
평정기준	[지자체형] 연 2회, [우수형] 분기별 1회 ①수요조사 및 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 횟수 ④결과기록 등 <u>모두 충족</u> ※ <u>어린이집 주관의 자체 부모교육이 최소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함</u> 단, ③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2점 부여)
확인방법	수요조사 자료, 안내문, 결과기록,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2회 이상 실적 제출 * (우수형) 3회 이상 실적 제출

2. 참여성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개요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지정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등
배점	10점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 횟수 ④결과기록 등 <u>모두 충족</u> 단, ③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5점 부여)
확인방법	안내문, 결과기록자료,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3회 이상 실적 제출 * (우수형) 7회 이상 실적 제출

2. 참여성

바. 부모만족도 조사

개요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개방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배점	4점
평정기준	[지자체형] 연 1회, [우수형] 연 2회 ①만족도 조사지 ②안내문 ③실시 횟수 ④결과지 등 <u>모두 충족</u> 단, ③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2점 부여)
확인방법	만족도 조사지, 안내문, 결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1회 이상 실적 제출 * (우수형) 2회 이상 실적 제출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개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참관하는 것
배점	10점
평정기준	연중 상시 운영 ①참관 운영규정 ②참관안내자료(부모 OT자료 등을 활용한 안내 또는 안내문 현장 게시) ③부모참관 상시운영 <u>모두 충족</u>
확인방법	현장확인(상시운영 여부) * 현장확인 시, 참관운영규정, 참관안내자료 등 확인

3. 지속가능성

선정항목	배점
3. 지속가능성	10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연 1회)	4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3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모두 충족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3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①부모참여활동 결과안내(가정통신문 등) 및 다음 부모참여활동 안내 ②실시회수 등 모두 충족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개요	부모참여 활동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배점	4점
평정기준	연 1회 ①수요조사 설문지 ②결과지 ③실시 횟수 등 <u>모두 충족</u> ※ 부모교육 수요조사를 포함하여 실시 가능
확인방법	수요조사 설문지, 결과지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우수형 공통) 1회 이상 실적 제출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개요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지 여부
배점	3점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 횟수 등 <u>모두 충족</u>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3회 이상 실적 제출 * (우수형) 7회 이상 실적 제출

3. 지속가능성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개요	미참여한 부모 대상으로 부모참여프로그램 결과서 배포 및 참여 독려 안내 여부
배점	3점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①부모참여활동 결과안내(가정통신문 등) 및 다음 부모참여활동 안내 ②실시 횟수 등 <u>모두 충족</u>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3회 이상 실적 제출 * (우수형) 7회 이상 실적 제출

4. 다양성

선정항목	배점
3. 다양성	5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2
- 지자체형: 반기별 1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개요	상시 및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부모참여 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 계획되어 운영 (부모참여프로그램이 행사성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함) - 상시 부모참여활동: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등 - 정기 부모참여활동: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상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만족도 조사 등
배점	3점
평정기준	부모참여 활동이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상시 및 정기 프로그램으로 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상시 또는 정기 등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만으로 운영 시는 미인정
확인방법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4. 다양성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개요	지역사회의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일반적인 자원(도서관, 초등학교, 우체국, 노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트 등), 지역사회의 특별한 자원(해변, 생태습지,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활동 운영 여부
배점	2점
평정기준	[지자체형] 반기별 1회, [우수형] 분기별 1회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미인정 (부모대상 또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 인정)
확인방법	안내문,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2회 이상 실적 제출 * (우수형) 3회 이상 실적 제출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개요 지자체가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적용

배점 15점

**평정기준
확인방법** 지자체에서 정하여 적용

< 예시 >

- 부모 자율모임 구성 및 운영
- 인근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열린보육체험단
- 우수 프로그램 운영 등

6. 우수 프로그램(우수형)

6. 우수 프로그램(우수형)

개요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 아동 및 부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
배점	15점
평정기준	해당 년도에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으로 참여성, 지속가능성, 창의성, 적합성, 성과 등을 고려하여 평정
확인방법	우수 프로그램 *참고서식(별지 제6호 서식)을 고려하여 시설개요, 프로그램(필요성 및 목적, 배경, 대상, 기간, 활동내용, 프로그램 평가 및 적용) 중심으로 작성 - 제출분량: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15p 내로 한정. 초과 시 감점될 수 있음

6. 우수 프로그램(제출양식)

[별지 제6호 서식]

우수프로그램 제출양식

■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원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설립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현황	정원/현원	보육교직원 수	반 수
	/		
평가인증 여부	☐ 인증 ☐ 미인증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연도)	☐ 지정 ☐ 미지정 (연도)

■ 우수프로그램 작성(중빙자료를 포함하여 최대 15쪽 이내, 15쪽 초과 시 감점 될 수 있음)

프로그램명	
개요	4~5줄로 프로그램 요약

1. 필요성 및 목적

- 부모참여 우수프로그램의 실시배경 또는 동기, 필요성과 목적 등 기술

2. 프로그램 개요

- 1) 프로그램 특징
- 2) 연간계획안
- 3) 진행과정 및 프로그램 내용

3. 프로그램 대표 사례

- 우수프로그램 대표 사례 2~3가지 기술
- 기간, 대상, 장소, 활동목표 및 내용, 평가 및 환류 등 포함

4. 프로그램 평가 및 적용

-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의 변화와 반응 등 기술
- 프로그램의 장·단점 등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타 기관 적용 시 유의점 등

붙임2.

**열린어린이집
현황 및 서식**

2017 열린어린이집 현황 ('17. 12. 31. 기준)

구분	선정 시군구	어린이집 수	열린어린이집 지정	
			우수형	지자체형
총계	202/ 229	40,257	100	1,859
서울	25/25	6,231	15	203
부산	16/16	1,917	5	121
대구	8/8	1,464	4	91
인천	10/10	2,182	5	72
광주	5/5	1,242	3	52
대전	5/5	1,512	4	60
울산	5/5	881	2	26
세종	1/1	285	1	7
경기	31/31	11,810	29	639
강원	18/18	1,150	3	89
충북	11/11	1,191	3	97
충남	15/15	1,960	5	71
전북	14/14	1,506	4	86
전남	6/22	1,245	3	40
경북	18/23	2,063	5	101
경남	12/18	3,091	8	88
제주	2/2	527	1	16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제 2018-0000호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어린이집명 :

대 표 자 :

원 장 :

주 소 :

지정기간 : 2018.11.1.~2019.10.31.

위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

2018년 10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현판 및 상장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현판



제 호

상 장

000 어린이집

귀 기관은 어린이집 구조와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 ○

열린어린이집 관련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원장)	성명
	휴대폰 번호

어린이집 정보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유형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열린어린이집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비고> 열린어린이집 신청 관련 증명자료 등은 별도 첨부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 : 2018. 0. 0.

수신 : ○○○어린이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2. 당사자	대 표 자 명	○○○	어린이집 명	○○○ 어린이집
	주 소	○○시 ○○구 ○○○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발생 - 지정취소 사유 :		
4.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		열린어린이집 지정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전화)	()	
		전자우편		
		fax		
	제출기한	2018년 월 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어린이집 관련 양식

[별지 제3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2. 당사자	대표자성명	어린이집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통지서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어린이집표번호 : ○ 대표자 성명 : 2. 처분 내용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귀 원에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를 통지합니다. ○ 처분제목 :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 처분사유 : 2018. .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별지 제5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지정 취하원				
어린이집명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 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원장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지정취하 사유				
위와 같이 열린어린이집 지정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감사합니다.